

#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안내

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및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 
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## 1 지원대상
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(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포함)

## 2 지원내용

### 가.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
-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 또는 융자 지원  
※ 직장어린이집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

### 【 무 상 지 원 】

구분	설치형태		지원종류	한도액	지원내용
일반	대규모 기업	단독	시설전환비	3억원	소요비용의 60%, 80%*
		공동		6억원	
		공통	교재교구비 (교체비)	5천만원 (3천만원)	
	우선지원 대상기업	단독	시설전환비	4억원	소요비용의 90%
		공동		8억원	
		공통	시설개보수비** 교재교구비 (교체비)	1억원 7천만원 (3천만원)	
공모 사업	산업단지형	시설전환비	20억원	소요비용의 90% (시설매입비: 소요비용의 40%)	
	중소기업 컨소시엄형	시설건립비 (시설매입비)	10억원		
	공통	교재교구비 (교체비)	7천만원 (3천만원)		

\* 영아전담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

\*\* 어린이집 설치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마다 1회씩 지원

※ 소요비용: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

## 【 용 자 지 원 】

용자종류	한 도 액	상환방법	이 자 율
시설건립비, 매입비, 임차비, 전환비, 개보수비	7억원 (공동: 9억원)	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	· 우선지원 대상기업: 연 1% · 대규모 기업: 연 2%

※ 시설비는 용자와 무상지원을 병행하여 최대 10억원(산업단지형은 22억원)까지 지원 가능

### 나.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-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

#### 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】

지원 대상	월 평균 근무시간	1명당 월 지원금 한도		비 고
		우선지원 대상기업	대규모 기업	
원장 보육교사 조리원	주 40시간 이상	120만원	60만원	원장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	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	105만원	55만원	
	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	75만원	40만원	
	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	45만원	30만원	

#### 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】

지원대상	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 수	월 지원금 한도
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	39명 이하	200만원
	40명 이상 59명 이하	280만원
	60명 이상 79명 이하	360만원
	80명 이상 99명 이하	440만원
	100명 이상	520만원

※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산정되며,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(매월 말일 기준)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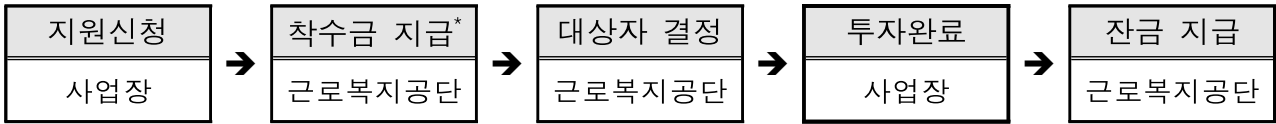
### 다.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용자 지원

- 모유 착유 및 수유 시설, 탈의실, 휴게실, 수면실, 기숙사, 샤워실,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용자 지원

#### 【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용자 지원 】

용자종류	한 도 액	상환방법	이 자 율
시설건립비, 매입비, 임차비, 전환비, 개보수비	7억원 (공동: 9억원)	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	· 우선지원 대상기업: 연 1% · 대규모 기업: 연 2%

## 【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비 지원절차 】



\* 지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예정금액의 70% 범위에서 착수금을 신청해야 함  
(단, 사업 착수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등의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착수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)

### 3 신청방법

**(설치비)** 직장어린이집 등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, 시설매입 또는 임차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,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

※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및 산업단지형 설치비는 별도의 공모기간에 신청

**(인건비·운영비)**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(운영비는 매 분기분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) 14일까지 신청

### 4 유의사항

**(공사 등 계약)**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시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·입찰·계약 체결 등을 하여야 함

**(지원금 집행)**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,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

**(채권관리)**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 필요(용자는 대행금융기관 약정 체결)

### ◆ 신청문의 ◆

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부산사무소

Tel. 051-320-8182~8, <http://www.kcomwel.or.kr/escac>